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0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누47126 기타(지방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54426 판결
변 론 종 결	2019. 9. 27.
판 결 선 고	2019. 10.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6. 원고에게 한 취득세 71,837,6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9,157,3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26,2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0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과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 '인천 서구 C'을 '인천 서구 E'으로 고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1) 취득세 비과세 통지서(갑 제10호증)에서 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의 근거규정으로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20조 제3항만을 들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 및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면제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취득세 감면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갑 제6호증의3)를 검토하였음에도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2년 이내에 임대가 이루어지면 취득세 면세액 등이 추징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고 취득세 비과세 통지를 함으로써(갑 제10호증)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과실 없이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임대부분을 임대하였다. 특히 위 비과세 통지서에는 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0

근거 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만을 들고 있을 뿐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을 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처분 중 각 본세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가산세 부분도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각 본세 부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의무위반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상 중과세율 적용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5. 9. 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7. 4. 24.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임대부분을 임대하여 2017. 5. 31.부터 사용하게 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도 해당한다. 위 각 추징사유에 해당하므로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한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단서 및 ②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취득세 비과세 통지서에 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의 근거규정으로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20조 제3항만을 들고 있다고 해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조세부과권의 발생 내지 행사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0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신고납부방식을 취하는 세제 하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취득세 등의 감면 신청을 받으면서 장차 이 사건 임대부분을 임대하려고 하는 원고의 사업계획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 사업계획에 따른 임대와 관련하여 취득세 면제액 등이 추징될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은 채 취득세 비과세 통지서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부분의 임대가 취득세 면제액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추징을 위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취득세 비과세 통지서에 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근거 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만 기재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5. 9. 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7. 4. 24. 주식회사 D에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0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임대부분을 임대하여 2017. 5. 31.부터 사용하게 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사유 및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취득세 비과세 통지서(갑 제10호증)에도 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의 근거규정으로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20조 제3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사유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그와 같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의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0

판사 이원범

판사 강승준